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44
----------	---------

제출연월일	2005. 8.
제 출 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도부터 공시일 변경으로 일시에 2개년 상승분이 토지분 재산세에 반영되어,
(공시일 : 6. 30 ⇒ 5.31, 과표적용일 : 매년 6.1일 기준)
- 2005년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므로 재산세 과표를 경감하여 지방세 부담을 감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하도록 신설함.(안 제29조의3 신설)

■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3069('05. 8. 18)
- 경상남도 세정과 - 7100('05. 8. 19)호의 표준안에 의함.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3(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한다. 적용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의 3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9조의 3(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p>